안세재경저널 회원용 · 2025년 9월 10일 (수) · 주간 제37호 · 통권 제1744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구독료 월 30000원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경영박사

중기업 경영관리 외주화

2025/ 9/ 10 통권 1744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2025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상법 개정의 이해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1)
-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전략 5가지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점은 배당금 지급일임 (p.12)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용역의 소비·소모 판단〉

개념, 구분	과세거래인 경우 핵심요소 (재화·용역 소비)	과세거래 아님 (재화 등 소비아님)
본질요소	재화·용역의 사용, 소모, 소비가 발생되기 시작	소모, 소비안되는 금전 (화폐, 대용증권, 지분 등)
매매	현금, 외상, 할부판매 등 재화가 소모됨	양도담보 제공
교환	재화인도 → 다른 재화 받는 정상적 교환은 둘다 재화 소비	불량품 교환
가공	제공받은 재화에 공작·작업함	가공, 변형 없음
대차거래	소비대차거래(재화 빌려주고, 다른 재화로 받는 것) : 2번의 거래	사용대차(빌려준 재화를 그대로 반환)
대물변제	사업용 재화로 채무변제도 재화소비 발생	사업용재산의 세금납부(물납)
수용	사업용 자산의 수용도 재화·소비임	공익사업보상관련 수용
경매	일반 경매는 재화의 사용소비 발생	국세징수법 공매 (민법, 상법 등 법률상의 경매)
현물출자	법인에게 재산을 출자(소비행위)하고 출자지분 취득	출자지분의 타인양도 출자지분의 현금 환급
폐업처리	사업자 폐업시 잔존재화도 재화소비 발생, 과세거래	• 과세된 잔존재화의 처분 • 폐품처리 등

(안세회계법인 대표이사 박윤종공인회계사 작성)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44호 / 주간 37호 2025. 9. 10. (수)

·발 행 인 : 이윤선
·제 작 : ㈜안건조세정보
·대표전화 : 02) 829-7575
FAX :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 02) 829 - 7575
팩스 :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 051) 642 - 3988
팩스 :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 053) 654 - 9761
팩스 :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 010) 3409 - 2427
팩스 :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 010) 5255 - 6116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④ 즉답(010-2672-2250)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⑧ CEO·CFO 경영에세이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목 차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재화·용역의 소비·소모판단	표지
CEO의 경영산책	상법 개정의 이해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1)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매출취소(직수출) 문의 -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 사업부 매각 분리 -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5 6
눈에맞는절세미인	임직원 등에게 발생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7
매일절세재무요점	-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9 10
직장인Survival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전략 5가지	11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기준법규법인-83, 2024.08.08) -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 2024.07.25)	12 13
세정뉴스와 해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방세 감면 확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50% 상향	14
마케팅 Tax consulting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점은 배당금 지급일임	12
세무정보	-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15 17 28
회계정보	-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33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상법 개정의 이해와 기업의 전략적 대응(1)

이 재 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 배경

2025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소액주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어 개정되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 증가와 경영권 방어 약화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지배구조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개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상법 개정의 핵심 내용

조항	현행 상법	2025년 7월 개정 상법
이사의 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등)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로 한정됨.	이사의 충실의무가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 이사는 주주 이익 보호 및 공평한 대우 의무 명시
감사위원 3%룰 제542조의12 (감사위원회의 구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감사위원 선임 시 각각 3%씩 의결권 행사 가능. 사실상 합산 12%까지 행사 가능.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제한. 의결권 제한 강화로 소수주주 영향력 확대.

전자주주총회	전자 주주총회 개최는 선택 사항.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 의무화. 비대면 주총 활성화
사외이사(독립이사) 비율 제542조의8(독립이사의 선임)	사외이사(독립이사) 최소 선임 비율: 이사 총수의 1/4	독립이사(사외이사) 최소 선임 비율: 이사 총수의 1/3로 상향
	'사외이사' 용어 사용.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개정 상법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즉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 '3%룰' 도입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되었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게 하려는 것임 .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는 앞으로 전자 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이는 주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비율 상향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려는 것임.

◉ 기업경영의 영향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은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 주주 참여 확대 등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경영진의 책임과 법적 리스크도 커지는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사의 법적 리스크 증가 및 경영 의사결정 위축 등에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다각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본 고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 경영의 변화의 요구와 리스크, 그리고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전략과 실천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8월 29일 (금)	9월 1일 (월)	9월 2일 (화)	9월 3일 (수)	9월 4일 (목)
미 달 러	(USD)	1388.60	1387.70	1392.40	1392.20	1393.80
일 본 엔	(JPY)	944.79	943.05	946.25	937.41	941.72
영 국 파 운 드	(GBP)	1875.86	1873.88	1886.08	1863.67	1873.48
캐 나 다 달 러	(CAD)	1009.82	1010.01	1012.51	1009.90	1010.44
홍 콩 달 러	(HKD)	178.18	178.02	178.59	178.31	178.67
중 국 원	(CNH)	194.14	194.72	195.35	194.95	195.18
유 로 화	(EUR)	1621.61	1621.87	1630.78	1619.76	1625.17
호 주 달 러	(AUD)	906.76	907.97	912.51	907.51	912.03
싱 가 폴 달 러	(SGD)	1082.56	1080.85	1084.42	1080.10	1082.06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329.29	328.45	329.56	329.13	329.70

매출취소(직수출) 문의

Q 당사는 지난 2024.1월 해외법인에 매출을 발생 하였으나 현지 사정에 의해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해당 물품을 2025.4월 당사로 BACK 하였습니다.
이 때 매출취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취소가 결정된 시점인 2025년도에 매출취소를 하면 되는지 또는 2024년도 부가세, 법인세 수정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2024년 귀속 매출이 취소되었으므로 2025년이 아닌 2024년분 반영되어야 하며 2024년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지원금 회계처리 문의

Q 당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스타트업을 영위 하고 있습니다.
외부 대기업에서 개최하는 스타트업 협업 기업 선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본선진출을 함으로써 지원금 3000만원을 제공 받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통해 협업에 사용되는 비품(컴퓨터 등) 을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일시 지급된 3000만원을 잡이익 처리 하였는데, 더욱 알맞은 회계처리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A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닌 협업기업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지원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부 매각 분리

Q 당사는 현재 A사업부와 B 사업부 가 있으며 23년 6월에 B 사업부를 매각하여 분리 하였습니다.
1. A 와 B 회사 간의 거래 중에서 , 일부 계약 미 분리로 인하여 A 사업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비용 처리하고, 이를 B 사업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 Recharge 하였습니다. 이를 부가세 신고 시에 양쪽 회사는 수입신고제외 란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A와 B 회사 사이에 사업부 매각으로 인하여 판매한 고정자산과 선지급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

를 발행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로)
이때, 고정자산 매각 금액은 매출로 신고하고 선지급에 대한 금액은 수입금액 제외 란에 넣으면 될까요? (현재 당사는 일반 고정자산 매각 대금은 수입금액 제외 하지 않고 매출로 신고 하고 있습니다.

1. 수입신고제외란이 아닌 다른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신고반영하시면 됩니다.
2. 포괄사업양수도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데, 귀사의 사업부매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모르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인간 대금 정산 방법 확인 요청

Q 당사A의 일부사업부를 물적 분할 후, B법인에 양도하였습니다.
분할하기는 하였으나, 판매처 중 온라몰 법인 이관하는데 시간이 걸려,
분할후에도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역) 및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고, B법인에 대금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또 B사업자로 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받고, B법인으로부터 대금 입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매입은 판매수수료로, 매출대금 차감하고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음)

1. A와 B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지?
2. 발행대상이 아니라면,
   1) 매출 : A는 기타매출 마이너스 신고하여, 결국 매출 부가세 납부하지 않고 B는 기타매출 신고하여 매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2) 매입 : A법은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 B법인은 증빙없이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비용처리하면 되는지?

A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분할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A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대금수수하면 안되고 해당 매출 세금계산서발급 및 대금수수를 B법인 명의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임직원 등에게 발생된 상여 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세무처리

상담실 백종훈 차장

세무조사에 따라 법인의 임직원에게 상여처분 등이 발생하여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의 사후 세무처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귀속이 명확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은 해당 임직원에게 상여처분함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 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 사항과 손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한다.

이러한 소득처분은 유보,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는데, 익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조사나 국세청의 결정 · 경정에 의해 특정 임원이나 직원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임원이나 직원에게 근로소득세의 추가납부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여처분을 받은 임원이나 종업원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대신 납부해 주고 손비로 처리하였다면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납부세액에 대해 다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한다.

법인이 근로소득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회수하지 않는다면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 서면2팀-825, 2007.05.02

【질의】

(사실관계)

- 질의1) 12월말 결산법인 갑법인은 2005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시 대표자 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함. 을은 2006년 3월에 퇴사하였으며 가지급금은 퇴사시 전액 회수함. 갑법인은 2006년 4월 원천세 신고시 전대표자 을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분

을 대방하고 “세금과공과”로 계상함. 2006년도분 법인세 세무조정시 위 “세금과공과”로 계상한 원천징수분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 질의2) 위 질의1)과 무관하며, 법인세 신고시 병법인은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대납하였고, 대납액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익금산입, 상여처분”을 한 후, 다시 추가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대납하는 경우 또다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세를 계속 대납하는 경우 계속적으로 상여처분을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요지)

- 대표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납분에 대한 소득처분

【회신】

귀 질의1)과 같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고,

귀 질의2)와 같이 법인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고 비용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처분하는 것임.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소득세 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반영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또는 추계결정 · 경정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된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표자의 소득세를 대납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법인이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소득세를 대납하면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않는 것으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소멸로 손비처리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면 된다.

이는 소득처분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에 한하며, 그 귀속자가 대표자 본인에게 분명히 귀속되어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 대납액(가지급금)에 대해서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365 매일절세재무요점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인구감소지역 지방세 감면 확대

구분	현행		개정	
인구감소지역 광역시(5개구) 外 84개 지역	주택 가액 기준		주택 가액 기준 상향	
			수도권*	비수도권
	취득세	취득가액 3억원	3억원	12억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원	4억원	9억원
			* 강화·옹진·연천·가평	
인구감소 관심지역 강릉, 익산, 경주, 사천 등 9개 지역	<신 설>		취득세	취득가액 3억원
			재산세	공시가격 4억원
			※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	

화 시중은행 퇴직연금 전략 비교

은행명	상품 전략
KB국민은행	IRP 적립금 5000만원 이상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AI 투자일임형 서비스 도입 등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IRP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출시 -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자동 생성·운용
신한은행	IRP 신규 계좌 비대면 수수료 면제, 고액 퇴직자 대상 맞춤 혜택 제공
우리은행	비대면 IRP 신규 고객 수수료 면제, 업계 최다 상품 라인업 및 투자 전략 다양화 등

水 청년 자산형성 정책 변천사

정권	정책명	시행시기	주요 특징
박근혜 (2013~2017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	청년 월 12만5000원 저축 + 기업 동일 + 정부 2배 지원 = 최대 1200만원(2년 만기)
문재인 (2017-2022년)	청년내일 채움공제	2017-2024	청년 300만원 + 기업 400만원 + 정부 900만원 = 총 1600만원(2년 만기)
	청년희망적금	2022년 초 한시적 가입	기본금리 연 5%(2년 만기) 월 50만원 한도 저축 + 은행 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 장려금
윤석열 (2022년~2025년)	청년도약계좌	2023~2025년	기본금리 연 4.5~6.0%(5년 만기) 월 70만원 한도 저축 +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최대 3만3000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2024년~	청년 600만원 납입 - 796만원 수령(5년 만기) 청년 1800만원 납입 → 2388만원 수령(5년 만 기) 청년 3000만원 납입 → 3980만원 수령(5년 만 기)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2023~2025년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이재명 (2025년~현재)	청년미래적금	2026년 도입 예정	청년이 1~3년 적금 납입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25% 가량 지원하는 형태(예상)

木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기준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 합산 2000만원까지 공제
- 성인은 5000만원까지 공제

갈등 상황에서 유용한 의사소통 전략 5가지

1. 즉시 대응보다 '한 템포 쉬기'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곧바로 말하면 불필요한 상처만 남기기 쉽습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문제가 아닌 '행동'에 초점 맞추기
"당신은 늘 그래" 같은 표현은 인신공격처럼 들립니다. 대신 "이번 보고서에서 수정이 늦어진 부분이 힘들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에 집중하면 대화가 훨씬 건설적으로 흘러갑니다.

3. 경청으로 신뢰의 틈 만들기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듣는 태도는 '당신의 이야기를 존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갈등 상황에서조차 경청은 상대의 방어심리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기술입니다.

4. '나'의 감정으로 표현하기
"네가 틀렸어"보다 "나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처럼 '나(I)-메시지'를 사용하면, 상대를 탓하기보다 내 감정을 공유하는 방식이 됩니다. 방어적 반응을 줄이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쉽습니다.

5. 해결책을 함께 찾는 태도
갈등의 끝은 '누가 옳은지'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입니다. 상대와의 합의점을 찾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정리해야 갈등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됩니다.

최 신 판 례 예 규

'20~'21 과세연도에 외투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법§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기준법규법인-83, 2024.08.08

▌질 의

• 자문대상법인은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20~'21 과세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 조특법§121의2에 따른 외투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았으며, '18~'19 과세연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에 대하여 조특법 127③을 적용함으로써 추가공제 금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내국인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세액공제하였음

• 자문대상법인은, 「'18~'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추가공제는 '20~'21 과세연도에 대한 외투감면과 중복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조특법 127③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추가공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초 미공제세액(추가공제금액×외국인 지분비율)의 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음

질의

• '20~'21 과세연도에 외국인 투자감면을 받은 법인이 '20~'21 과세연도에 「'18~'19 과세연도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받는 경우, 추가공제에 대해 중복지원 배제규정(조특법 127③)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 신

2020~2021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최초로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에 2018~2019 과세연도분 '고용증대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규정에 따른 공제할 세액에 내국법인의 총 주식 또는 총지분에 대한 내국인투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Marketing Tax consulting

초과배당이익의 증여시점은 배당금 지급일임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실제 배당금 지급일'임

기준법규재산-155, 2024.06.21

▌질 의

•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회 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40, 2024.6.10.

[질의]

'22.1.1. 전 배당결의 및 배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회신]

'22.1.1. 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실제 배당금 지급일'입니다

규정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소득-8, 2024.07.25

❙질 의

• 신청인은 A법인에 입사한 후 두 과세기간에 걸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법인 신주를 각각 취득

- 신청인은 행사시잉기 비과세 특례한도 내로 판단하여 행사이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납부특례도 신청하지 않음
- 이후 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존재함을 인지하였고, 향후 기한후신고 및 수정신고(이하 "기한후 신고 등")절차를 통해 납부특례를 신청할 예정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특례적용신청서 제출로 같은 법 제16조의3의 분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2024.7.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법규재산-1315, 2024.09.25

❙질 의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의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5%) 요건을 계속하여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은 상생임대차계약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의 증액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지방세 감면 확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50% 상향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 생애 첫 주택 취득 등을 중심으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 시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에 강화·옹진·연천·가평에 포함됐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의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하게 취득가액 3억원 내에서 취득세, 공시가액 4억원 내에서 재산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장·단기(10·6년)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임대기한 내에서만 적용한다.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는 최대 50%의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법에서 25%, 지역 조례에서 나머지 25%를 각각 감면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한도가 소형주택에 한해 300만원까지 확대됐다.

일몰예정이었던 출산·양육용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됐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창업·성장·폐업' 맞춤자금 10조원 푼다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금리 부담 인하 등 맞춤형 신규 정책자금이 10조원 공급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의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화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과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개선방안,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이 발표됐다.

먼저 금융위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성실상환자 대상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조5000억원), 경영애로(4조5000억원) 등 소상공인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으로는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대상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 및 운전 자금과 컨설팅 등 총 2조원의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한 긴급 특별자금 4조5000억원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외 금융위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 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730억원의 금융 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 갈아타기 650억원, 금리인하요구권 1680억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400억원 등에서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로써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갈아타기 서비스가 도입되는데, 차주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 비교추천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분기 중 은행권 중심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202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국세청, 2025. 8

정부는 지난 7.31.(목)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13개 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8.1.~8.14.) 및 입법예고(8.1.~8.14.)를 실시하였고 8.21.(목) 차관회의를 거쳐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4개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되었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3개 세법 개정법률안은 9.3(수)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첨 부 2025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1.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일 → 월 단위)(국기법 §47의4·§47의5)

당 초 안	수 정 안
□ 적용시기 ㅇ '26.7.1. 이후 지정납기 도래 : 개정규정 적용 ㅇ '26.7.1. 전에 지정납기 경과 : '26.7.1. 이후부터 개정규정 적용	□ 적용시기 변경 ㅇ (좌 동) ㅇ '26.7.1. 이후에도 종전규정 적용

<수정이유> 납세자 혼선 방지 및 집행 효율성 고려

2. 실태조사원의 체납자 정보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국징법 §116)

당 초 안	수 정 안
<신 설>	□ 실태조사원이 취득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ㅇ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수정이유> 체납자 정보 보호 강화

3.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규정 정비 (조특법 §100의18)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 동업기업 손익 배분시 가산세 ㅇ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추 가>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수정이유> 동업기업 가산세 합리화

4.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9, §76의21)

당 초 안	수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연결법인의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좌 동)

<수정이유> 연결자법인의 가산세 계산방식을 모법인에 맞추어 합리화

역외자산 양성화를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크게 늘었다

- 국세청, 2025. 8

□ (신고 결과)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6,858명, 94.5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1,901명(38.3%), 신고금액은 29.6조 원(45.6%) 증가하였습니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구 분	총신고	주식	예·적금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25 신고인원	6,858	1,992	3,197	2,320	319	80	704
(금액)	(94.5)	(48.1)	(23.5)	(11.1)	(5.7)	(2.2)	(3.9)
'24 신고인원	4,957	1,657	2,767	1,043	253	84	543
(금액)	(64.9)	(23.6)	(20.6)	(10.4)	(4.8)	(2.3)	(3.2)

* 채권, 보험, 기타

○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 48.1조원이 신고되어 '24년(1,657명, 23.6조원) 대비 크게 증가(335명(20.2%), 24.5조원(103.8%))하였으며, 특히 법인의 주식 신고금액이 23.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식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가상자산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46.4조 원이 신고되었는데 '24년(41.3조 원) 대비 5.1조 원(12.3%)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 인원과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상승으로 가상자산 신고인원이 증가하였고,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하였으며,

○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 (내용 분석) 자산별·연령대별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자산별 분포는 신고인원 기준 예·적금 3,197명, 가상자산 2,320명, 주식 1,992명 순이며, 신고금액 기준 주식 48.1조원, 예·적금 23.5조원, 가상자산 11.1조원 순으로 나타납니다.

○ 신고 연령대별 분포는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8.2%), ② 40대(25.7%), ③ 60대 이상(24.8%) 순이며,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2.1%), ② 40대(25.8%), ③ 50대(2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신고금액은 ① 60대 이상(57.5억원), ② 40대(44.6억원), ③ 30대(41.1억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향후 계획)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24년까지 821명에게 과태료 2,633억원 부과

○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기한 후 신고한 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고시 '25.12.31.까지 70%, '26.6.30.까지 50%, '27.6.30.까지 30% 감경

○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내역 국가간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Ⅰ 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1. 결과 개요

□ 올해 해외금융계좌 전체 신고인원은 총 6,858명, 신고금액은 94.5조 원으로 지난해 신고인원 4,957명, 신고금액 64.9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901명(전년대비 38.3%)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29.6조 원(전년대비 45.6%) 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지난해 신고인원 1,657명, 신고금액 23.6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335명(전년대비 20.2%) 증가하였고, 신고금액은 24.5조 원(전년대비 103.8%) 증가하였습니다.

○ 올해 신고실적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525명이 11.5조 원을 신고한 것과 비교해보면 신고인원은 1,206%(6,333명), 신고금액은 722%(83조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

(명, 개, 조 원)

구 분		'25년						'24년		
		인원(증감율)		계좌(증감율)		금액(증감율)		인원	계좌	금액
전 체		6,858	(38.3%)	30,351	(19.4%)	94.5	(45.6%)	4,957	25,430	64.9
	개인	6,023	(45.1%)	17,768	(32.2%)	26.7	(62.8%)	4,152	13,439	16.4
	법인	835	(3.7%)	12,583	(4.9%)	67.8	(39.8%)	805	11,991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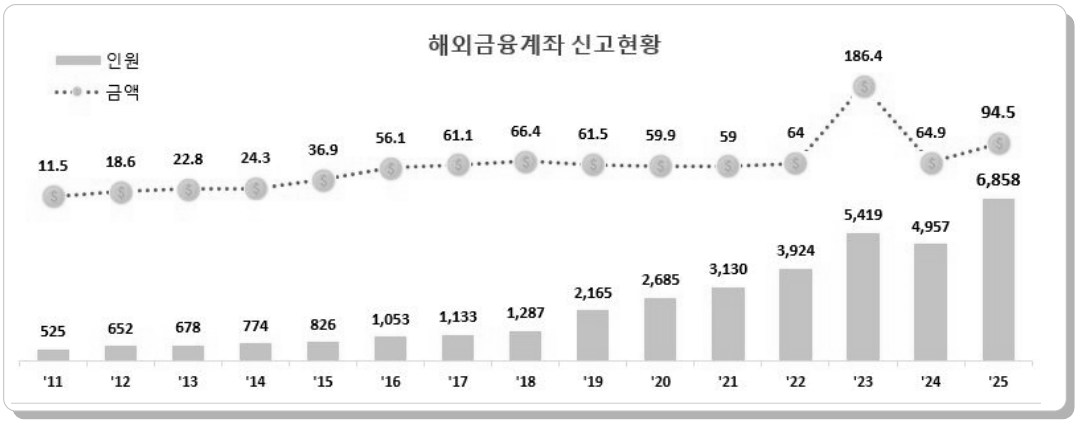

□ 개인신고자는 6,023명이 26.7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4,152명, 신고금액 16.4조 원 대비 신고인원은 1,871명(전년대비 45.1%)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0.3조 원(전년대비 6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68.8%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04.9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2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9배 큰 수준입니다.

【 '25년 개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인당 평균 신고금액
0~10%	18조 3,832억	68.8	603명	304.9억
10~20%	2조 5,551억	9.6	602명	42.4억
20~30%	1조 5,559억	5.8	602명	25.8억
30~40%	1조 850억	4.1	603명	18.0억

40~50%	8,153억	3.1	602명	13.5억
50~60%	6,518억	2.4	602명	10.8억
60~70%	5,389억	2.0	603명	8.9억
70~80%	4,500억	1.7	602명	7.5억
80~90%	3,750억	1.4	602명	6.2억
90~100%	3,100억	1.2	602명	5.2억
합 계	26조 7,202억	100.0	6,023명	44.4억

□ 법인신고자는 835개 법인이 67.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신고인원 805개 법인, 신고금액 48.5조 원과 비교하여 신고인원은 30개 법인(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신고금액도 19.3조 원(전년대비 39.8%)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0.9%를 보유하고 있고, 1개당 평균 7,336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하였습니다.

-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8억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1,265배 큰 수준입니다.

【 '25년 법인신고자 분위별 신고현황 】

(원, %)

구 분	신고금액	금액 비율	인원	1개당 평균 신고금액
0~10%	61조 6,221억	90.9	84개	7,336억
10~20%	3조 1,880억	4.7	83개	384.1억
20~30%	1조 2,903억	1.9	84개	153.6억
30~40%	6,557억	1.0	83개	79.0억
40~50%	3,921억	0.6	84개	46.7억
50~60%	2,537억	0.4	83개	30.6억
60~70%	1,608억	0.2	84개	19.1억
70~80%	1,057억	0.2	83개	12.7억
80~90%	738억	0.1	84개	8.8억
90~100%	479억	0.1	83개	5.8억
합 계	67조 7,901억	100.0	835개	811.9억

2. 신고자산별 분석

□ 가장 많이 신고된 「상위 3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총 6,858명) 기준으로 ① 예·적금(3,197명), ② 가상자산(2,320명), ③ 주식(1,992명), 신고금액(총 94.5조 원) 기준 ① 주식(48.1조 원), ② 예·적금(23.5조 원), ③ 가상자산(11.1조 원)으로 나타납니다.

○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1,992명이 총 48.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년(1,657명, 23.6조 원) 대비 335명, 24.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의 주식계좌 신고인원과 법인의 주식계좌 신고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23년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2,320명이 총 11.1조 원을 신고하였는데 '24년(1,043명, 10.4조 원) 대비 1,277명, 0.7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상승으로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주식,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등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금액이 지난해 대비 4.4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계좌 등 신고금액은 지난해 대비 4.5조 원 증가하였으나, 파생상품계좌 신고금액은 0.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 '25년 신고자산별 신고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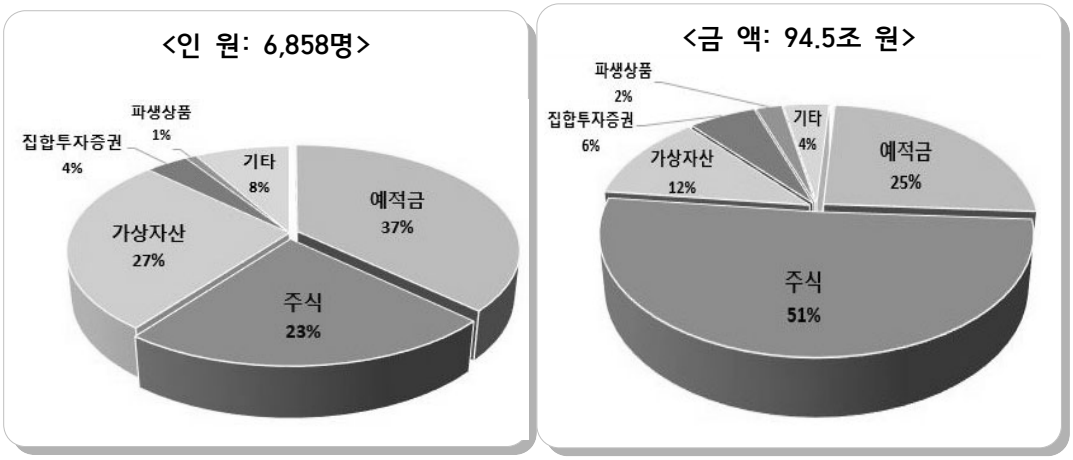

3. 신고자산의 국가별 분포 분석

□ 해외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개인신고자는 미국 계좌, 법인신고자는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고자산 보유 상위 5개국 신고금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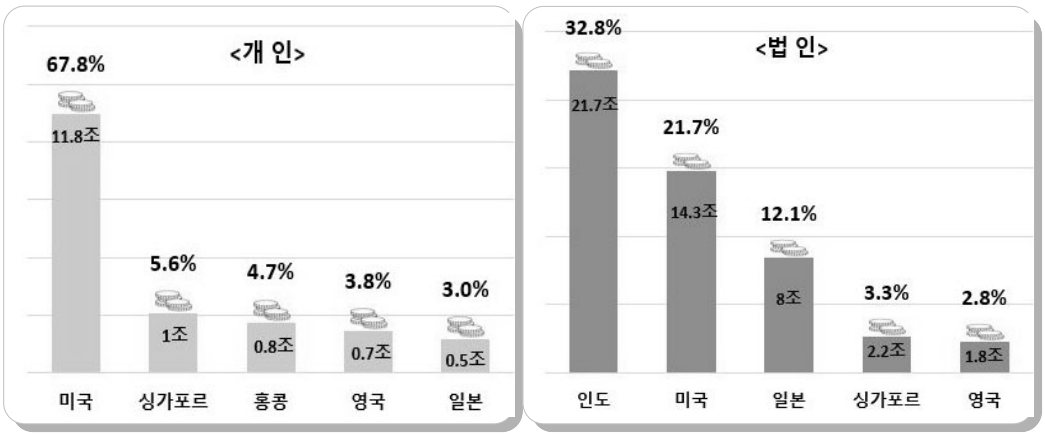

○ 자산별 신고금액을 보면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은 미국 계좌, 주식은 인도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신고자산별 보유 상위 5개국의 신고금액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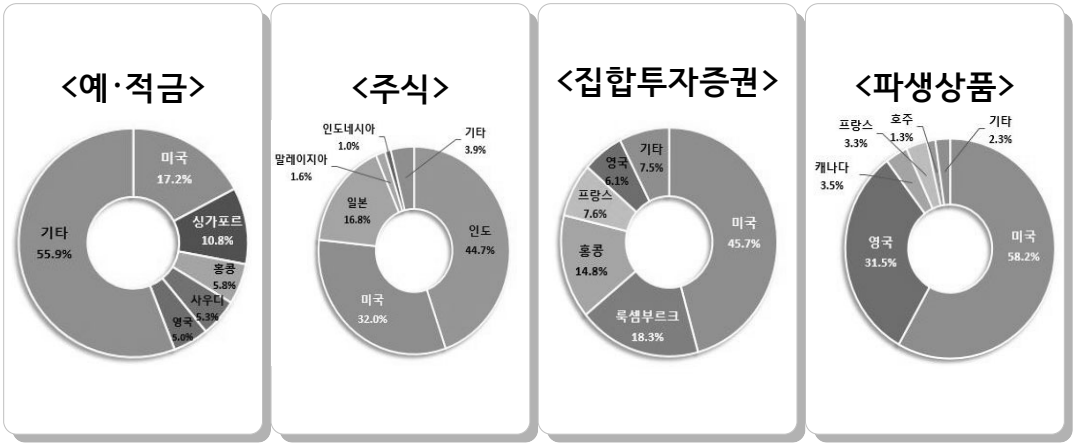

4. 신고내용 연령대별 분석

□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전체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① 50대(28.2%), ② 40대(25.7%), ③ 60대 이상(24.8%) 순으로 높았습니다.

○ 신고금액 비율은 ① 60대 이상(32.1%), ② 40대(25.8%), ③ 50대(22.3%) 순으로 나

타났습니다.

○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① 60대 이상(57.5억 원), ② 40대(44.6억 원), ③ 30대(41.1억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 '25년 연령대별 전체 신고자 신고현황 】

(원, %)

구분	신고인원	인원 비율	신고금액	금액 비율	1인당 평균 신고금액
20대 이하	212명	3.5	8,703억	3.3	41.0억
30대	1,073명	17.8	4조 4,145억	16.5	41.1억
40대	1,549명	25.7	6조 90611억	25.8	44.6억
50대	1,697명	28.2	5조 9,516억	22.3	35.1억
60대 이상	1,492명	24.8	8조 5,781억	32.1	57.5억
합 계	6,023명	100.0	26조 7,202억	100.0	44.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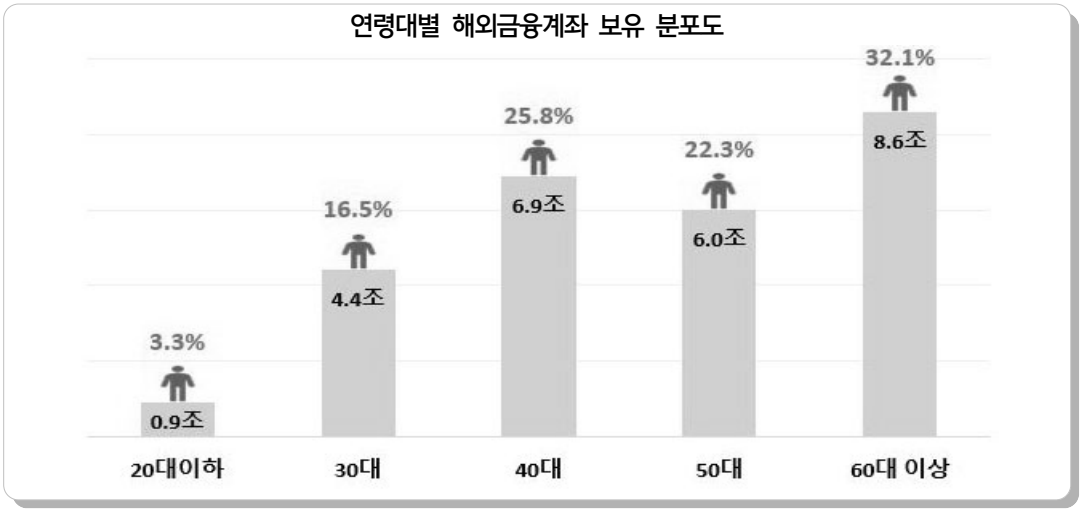

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습니다.

○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에 대하여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24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82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633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명,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인 원	821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74	110
부과액	2,633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251	225

○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 국세청은 '24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104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9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으며,
- 금년 말에도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명)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범칙처분	104	-	-	1	7	18	12	11	14	18	12	9	2
명단공개	9	-	1	1	2	1	1	1	-	-	-	-	2

Ⅲ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올해 신고기한('25.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한 후·수정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25.7.1.~'25.7.31.)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25.7.1.~'25.12.31.)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5.8.1.~'25.12.31.)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6.1.1.~'26.6.3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26.7.1.~'27.6.30.)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27.7.1.~'29.7.2.)	30%

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고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입니다.

○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붙임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 (신고의무자)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 (신고면제자) 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 (신고대상 계좌)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 (신고대상 정보)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 (과 태 료)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1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10% 과태료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 (명단공개)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 (범칙처분) 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붙임 2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지급요건 및 지급액

○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3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 국세청, 2025. 8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하여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19년부터 시행)

* 소득 기준 : (단독) 22백 만원, (홑벌이) 32백 만원, (맞벌이) 44백 만원 미만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대상)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5.1. ~ 6.1.)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국민비서)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전화하여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 (자동신청)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1544-9944)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포스터·전단지 QR코드 →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 인터넷 배너(카카오 비즈보드 등) → 홈택스(손택스) 자동신청 결과조회

○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25. 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되었습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참고 1 신청 안내 현황 및 신청 요건

◉ 신청 안내 현황

(천 가구)

가구 유형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1,341	278	93	100	155	234	481
단독	879	267	69	43	82	130	288

홑벌이	406	11	22	53	65	88	167
맞벌이	56	-	2	4	8	16	26

◉ 신청 요건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

» '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부부합산)	재산 요건
	2024.12.31. 기준	2024년❸**총소득** 및 2025년❹**연간 총급여**	2024.6.1. 기준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4만 ~ **2,200만원 미만**	❺가구원 전체의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1.7억 원~2.4억 원 미만은 **50%만 지급**
홑벌이 가구	❶배우자, ❷18세 미만 부양자녀, ❷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있음**	4만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	600만 ~ **4,400만원 미만**	

❶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❷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 미만
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금융·연금·기타소득 모두 합산
❹ '25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으로 환산
❺ 부동산,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분양권 등 합계액
* 주택은 실 전세금과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 전세금

참고 2 신청 방법

1 모바일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 (국민비서) 가입자는 알림 등록 앱(카카오,토스 등), 미가입자는 카카오톡으로 발송
□ (카카오톡/네이버)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문자메시지) ①'열람하기' → ②본인인증→ ③'신청하기'→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안심마크([web 발신] 확인된 발신번호)가 표시되니 확인 후 스미싱 걱정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 모바일 안내문의 스미싱 걱정되는 경우, ARS를 이용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 안내문을 받았으나 홈(손)택스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3 상반기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문 1 올해 12월 말에 얼마나 지급 받나요?

○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내년 6월에 정산(연간산정액-12월 지급액)니다. 다만,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이거나 정산 시 환수 예상되면 지급 유보합니다.

- 재산 가액 또는 총소득이 변동되어 다음 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5% 지급합니다.

문 2 상반기 급여액만으로 연간 환산근로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반기 총급여액 등을 연간 환산 근로소득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 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사자, 일용근로자 : 상반기 총급여×2
  * 계속근로자는 6월 30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입니다.
  * 근무월수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합니다.

문 3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 4 **이번 9월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은 안하나요?**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녀장려금이 해당될 경우 내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문 5 **자동신청 사전동의란 무엇인가요?**

○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됩니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신청되지 않습니다.

○ 장려금이 자동신청되면, 당해연도 재산요건 검토를 위해 가구원을 포함하여 금융재산을 조회합니다.

문 6 **다음 해 자동신청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 7 **자동신청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자동신청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 금융위원회, 2025. 8

Ⅰ. 검토 배경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

ㅇ 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연계

□ 금융위(증선위)는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회계개혁」(외부감사법 전면개정, '17.10월)을 계기로 과징금을 도입하고 엄정 제재

ㅇ '18년 이후 '25.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회사 및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약 1,000억원 과징금 부과

제재 건수(건)			
과실	중과실	고의	계
383	39	68	490

과징금(억원)		
회사	회사관계자	계
856	132	988

ㅇ 고의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감소 추세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고의 분식은 오히려 증가세

구 분	'19	'20	'21	'22	'23	'24
회계부정 제재건수	23	65	85	106	97	84
고의 분식회계	2	9	9	8	13	21
내부자 등 회계부정 신고	-	-	125	130	141	179

⇨ 회계부정 제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징금 등 제재기준·방식을 한층 강화하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마련

◈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존재 → 경제형벌 강화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차단이 효과적

II. 개선방향

기본 방향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

◇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인 – 회계감리(당국)의 3중 회계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재방식 개선
※ 연구용역과 함께, 수년간 증선위·감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추진 과제

회계부정 엄정제재	
회사	•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규모 확대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
개인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회계감시 강화 유도	
회사	• 내·외부감사, 당국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 회계관리 부실 회사에 내부회계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조치 신설
내부감시기구 등	• 회계부정 예방노력에 비례한 제재감경 적용 • 교체 경영진 ·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신속조사·정정시 제재감면(최대 면제)

시장신뢰 회복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주기가 약 20년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억제할 강력한 금전제재 부과

❶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및 제재조치 양정기준 강화

❷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가 큰 '장기간'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❸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 외형상 분식회계의 책임자가 아니나,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 회계부정을 주도적으로 지시·관여한 자

❹ 회계부정 관여자(개인)에 대해 책임·죄질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인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3대축인 내부감사(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인, 회계감리(회계당국)가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개선

❶ 자료 위·변조 등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엄정 조치

❷ 회사 내부회계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재무제표 산출·공시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❸ 내부감사기구 제재수준이 회계감시 노력수준에 비례하도록 제재 양정기준 정교화

- 감사위원회 등이 사전에 회사의 회계부정을 인지·조사·수정한 경우, 감사위원(감사) 뿐 아니라 회사에도 제재 인센티브 부여

❹ 회계부정이 조기에 조사·적발·정정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나 대주주 교체시 회계부정 조사에 따른 제재 인센티브 강화

Ⅲ. 주요 추진과제

Ⅰ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 관리종목 지정, 투자·대출 회수(EOD 발동 등)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과거 조치사례 : ①사실은폐, ②위조서류 제출 등을 통한 회계부정]

① A社코스닥는 종속회사의 청산결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하고 관련 손상차손을 미반영하여 자산 및 자본 과대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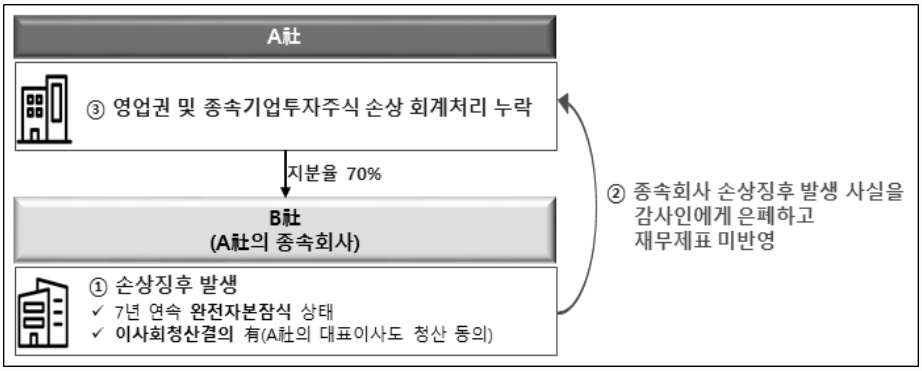

◈ C社코넥스는 수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여 관세청에 제출하고 수출신고필증 등을 발급 받았으며, 위·변조 서류를 토대로 매출을 허위 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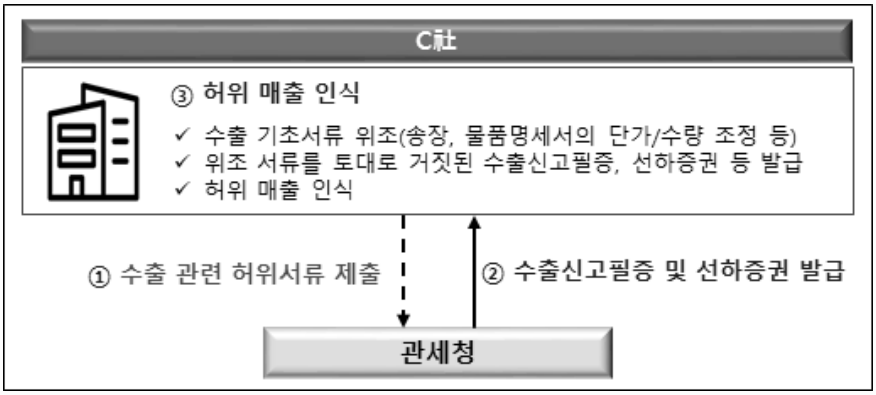

□ (개선방안)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 제재 양정시 중요도를 '中'에서 '上'으로 상향 적용(횡령·배임,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수준)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회계분식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자본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을 반영

⇨ 최근 3년간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약 34% 증액 효과 (최소 21%~ 최대 115%)

< 과징금 부과액 변화 예시 >

구분	기준금액 (위반금액) (A)	중요도점수					부과 기준율 (B)	부과액 (A x B)
		위반내용 (0.4)	위반규모 (0.2)	회사유형 (0.2)	시장영향 (0.2)	점수		
현행	300억원	2	2	3	3	2.4	15%	45억원
개선		3	2	3	3	2.8	20%	60억원 (33%↑)

※ 외감법상 과징금 산출방식

과징금 = 위반금액[1] × 부과기준율[2)3)]

1)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

2) 위반행위 내용(40%), 위반규모(20%), 상장여부(20%), 시장영향(20%)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 점수(1~3점) 산정

3) 중요도 점수에 따라 최소 2%~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

< 회사 대상 부과기준율 >

중요도점수	2.6 이상	2.4 이상 ~2.6 미만	2.2 이상 ~2.4 미만	2.0 이상 ~2.2 미만	1.8 이상 ~2.0 미만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4 미만
부과기준율	20%	15%	12.5%	10%	7.5%	5%	3.5%	2%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필요

2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과징금 도입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토록 기준 마련

○ 그러나,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개선방안) 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 ㅇ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예, 2년: 30%, 3년: 60%, 4년: 90% …)
- ㅇ (중과실 회계위반) 위반기간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20% 가중
  (예, 3년: 20%, 4년: 40%, 5년: 60% …)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고의·중과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20~200%(평균 31%) 증액 효과

[과거 조치사례에 同 개선방안 적용시 효과]

◈ 상장회사코스닥 A社는 4년간('18~'21) 회계위반(고의)이 지속되어 투자자 피해가 확대됐으나, 과징금은 '18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 과징금 부과금액 변동 >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	[개정] 부과액
	'18년	'19년	'20년	'21년			
과징금	60억	53억	46억	38억	60억		114억
					가장 큰 '18년 기준으로 부과		'18년 기준 과징금에 90%(30%*3년) 가중

◈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제출대상 B社는 3년간('20~'22) 회계위반(중과실)이 지속되어,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였으나, 과징금은 '22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

< 과징금 부과금액 변동 >

구분	연도별 과징금 산출금액			[현행] 부과액	→	[개정] 부과액
	'20년	'21년	'22년			
과징금	7억	19억	35억	35억		42억원
				가장 큰 '22년 기준으로 부과		'22년 기준 과징금에 20%(20%*1년) 가중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별표7(조치 등의 기준)] 및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3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분식회계 주도·가담자 등은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 금전적 보상'

을 받은 경우만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야할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 '직접 받은 보수'가 없거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계열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서도 법적 책임 회피 가능

[과거 조치사례 : ①사적유용, ②계열사 임직원를 통한 분식회계]

◈ A社코스닥와 B社의 사실상 실소유주인 甲*은

* A社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업무집행지시자

○ A社코스닥로 하여금 자신이 공동지배하는 B社에 보증금·선급금 명목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그 중에 55억원을 지인 및 차명보유 회사를 통해 사적으로 유용

○ 甲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특수관계자 주석에서 관련 거래를 공시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A社코스닥의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

○ 그러나, 甲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 등이 없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함

※ 한편, 甲의 지시를 받고 분식회계를 수행한 대표이사만 3.7억원 과징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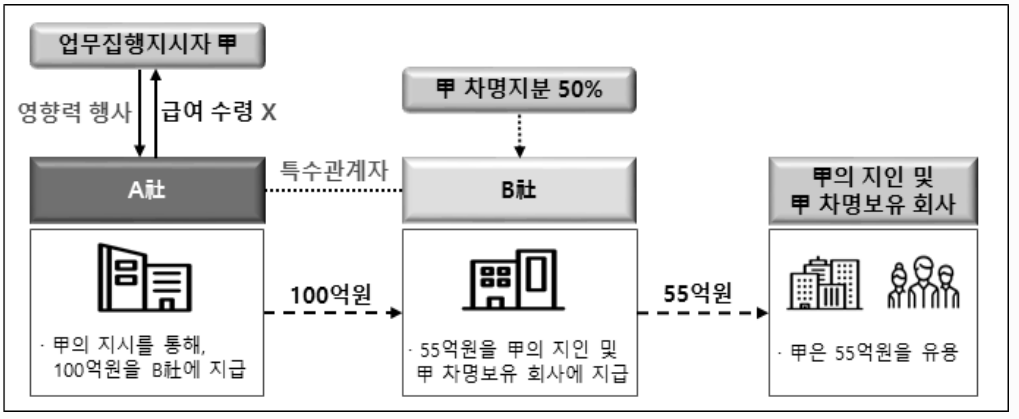

[과거 조치사례]

◈ A社코넥스의 재무담당임원 乙은 회사의 회계부정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음

◈ 그러나, 乙은 A社코넥스의 계열사인 B社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B社에서만 급여를 받고, A社코넥스에서는 별도급여를 전혀 받지 않아서 과징금 미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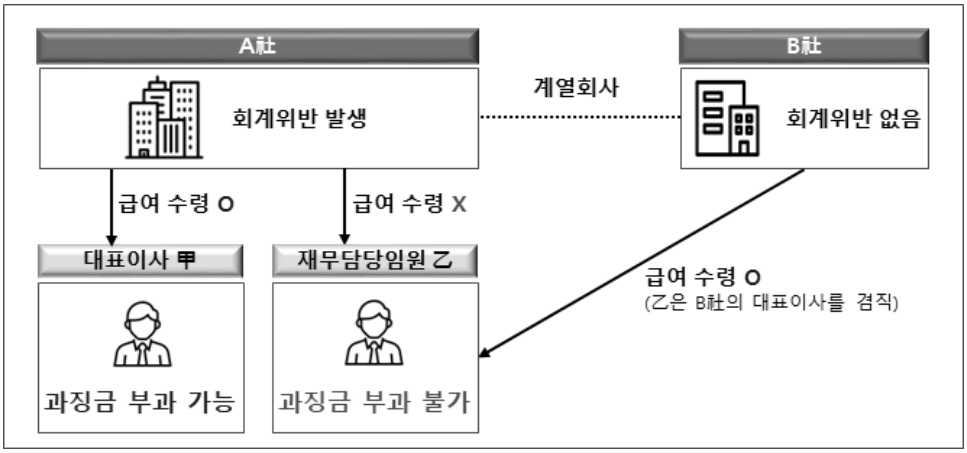

□ (개선방안)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개선

❶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 금전적 보상(보수, 배당 등), 횡령·배임액(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금액으로 한정) 등

❷ 계열회사(회계상 동일 연결실체 내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

*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

❸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금액* 신설·부과

*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17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2억원) 등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

※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부정 가담자 개인과징금 부과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 운영중

* 개인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부과 가능(외감법)

ㅇ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

❶ (감경기준) 재무제표 정정공시 등 現 경영진의 사후 수습노력에 대한 제재감경이 회계부정에 직접책임이 있는 前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 '회사'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에 대한 '회사관계자' 적용범위 >

가중 사유	적용대상	감경 사유	적용대상
과실 조치 후 3년 이내/고의·중과실 조치 후 5년 이내 고의·중과실 위반	관련자	회사가 자산·매출 1천억 미만	모두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관련자
위반기간 3년 초과(고의 위반)		이해관계자 피해 충분히 보상	모두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제출 거부		심사·감리 착수 전 수정공시	
내부회계 중요 취약사항 발견	대표, 감사 등	감리 후 1개월 이내 수정공시	
위법행위 중요도 상	관련자	3년 이내 밸류업 우수표창	관련자
사회 통념에 비추어 과징금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참작	
		위반자의 부담능력, 취득이익 고려	

[과거 사례 : 새로운 경영진의 회계 정상화 노력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

◈ A社코스닥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었으며, 새 경영진이 외부 전문가 조사 및 재감사를 수행하여 회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회사의 과징금 20% 감경

ㅇ 다만,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정정 공시를 위한 노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前대표이사의 과징금도 함께 감경되는 문제 발생

❷ (부과한도) 개인 과징금 부과한도가 낮아 회사관계자별 책임이 다름에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조치 실효성·형평성 저하

- 약 70% 이상이 과징금 부과한도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과징금 차등화가 사실상 불가능

  *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

[과거 사례 : 위반행위 가담정도가 다름에도 동일한 과징금 부과 사례]

◈ ㈜D비상장은 고의로 가공의 매출을 계상하였고, 업무집행지시자(최대주주) A 및 담당임원 B가 이 회계처리위반을 주도

ㅇ 업무집행지시자 A 및 담당임원 B가 회계부정 사실을 은폐하고 회계정보 접근을 차단함에 따라, 前대표이사 C는 회계부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과징금 부과한도로 인해 A, B, C 모두 동일 과징금 부과

□ (개선방안)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 및 적용기준 개선

❶ 정정공시(20~30%) 피해보상(50%)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 제외

❷ 고의 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 → 20%로 2배 상향하여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 차등부과

※ 중과실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10%로 유지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시뮬레이션 결과, 고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44% 증액 효과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35①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II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1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❶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❷외부감사인, ❸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 운영중

① 회사(내부)	② 감사인(외부)	③ 감독당국
내부감사기능(감사위원회, 감사)	'독립적'인 검증 기능	제도, 절차, 제재 원칙 수립
✓ 주주를 대신하여 회계부정 감시	✓ 재무제표 적정성 검증	✓ 회계기준, 감사기준 제정
✓ 회계처리 적적성 검증	✓ 내부회계감리제도 감사	✓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통한 회계부정 제재조치
✓ 회계 오류나 부정 확인 즉시 조사 조치	✓ 지배기구 및 감독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인 감사품질 감독 등

○ 그러나, 회계감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 최근 5년간 외부감사 방해 : ('19년~'23년) 연평균 2.6건 → ('24년이후) 6건
최근 5년간 회계감리 방해 : ('19년~'23년) 연평균 0건 → ('24년이후) 4건

[과거 사례 : 외부감사 방해]

◈ A社코스닥는 감사인이 재고 보관업체에 '타처보관조회서*'를 발송할 경우, 재고자산 과대계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보관업체에게 거짓 회신 요청

* 타처(他處)보관 재고 조회 : 회사 소유의 재고자산을 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외부기관에 재고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는 감사절차

ㅇ 원재료 보관 업체는 A社코스닥의 요청에 따라 감사인에게 거짓 회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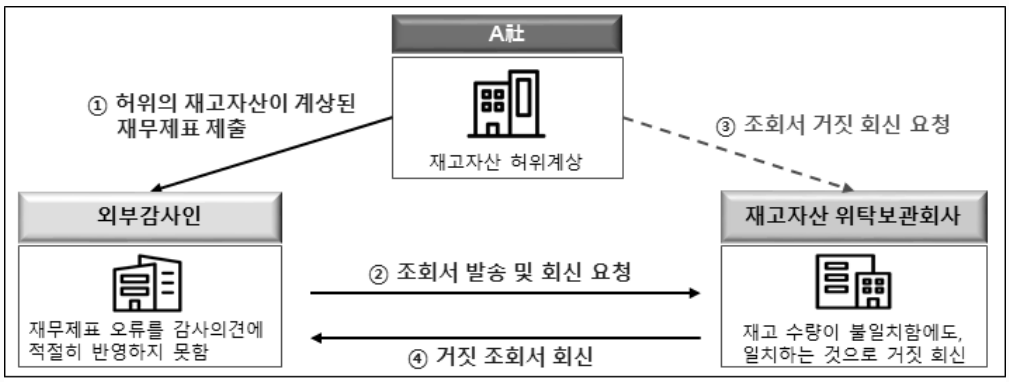

[과거 사례 : 재무제표 심사 방해]

◈ A社코스피는 '12년 금감원의 재무제표 심사 당시, 회계기준 위반이 있었음에도 위조계약서의 제출을 통해 지적을 회피

◈ 이후, '23년 회계오류 수정공시로 인한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금감원은 A社코스피의 '12년 위조계약서 제출사실을 인지하였으나,

ㅇ 회계오류에 대해 증선위 조치('24년)를 받았을 뿐 '12년도의 심사방해 행위(위조서류 제출행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제재 조치 미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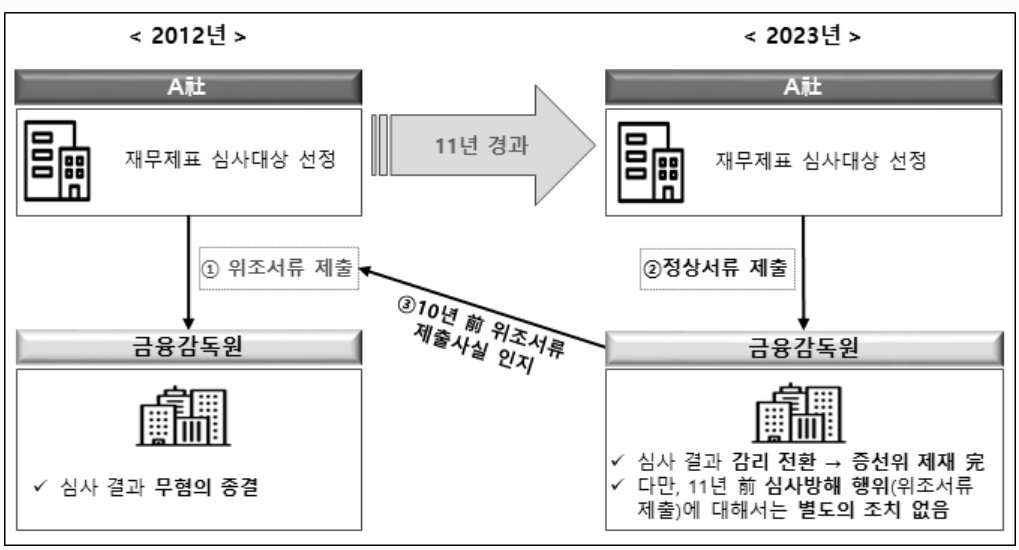

□ (개선방안) 내부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외부감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방해 발생시,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강력 제재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

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 ㅇ (감사기능 방해) 정당한 이유없는 감사위원 등의 자료요구 및 회계오류 정정 요구 불응 또는 자료 위·변조 등
- ㅇ (외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위변조, 재고실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 ㅇ (심사·감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재고자산 은폐 등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2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 ㅇ 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 ㅇ 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과거사례 : 다수의 재무제표 오류 발생]

◈ A社와 B社는 재무제표 오류·정정 규모가 유사하여, 투자자, 금융회사 등 정보 이용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유사하나, 제재수준은 큰 차이

◈ A社는 경조치만 부과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회계전문성 확보를 위한 투자 등에 소홀할 가능성

지적사항	A社		B社	
	중요도	위법동기	중요도	위법동기
A.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3.5	과실	9.0	중과실
B.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 과소계상	3.5	과실	1.0	과실
C.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3.5	과실	0.5	과실
위반 중요도 단순합산	10.5	-	10.5	-
최종 조치수준	과실 II단계(10.5배)		중과실 II단계(9배)	
조치 내용	경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 (개선방안) 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근본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ㅇ '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년)

< '24년 심사처리건 중요도 분포(25건, 평균 6) >

합산시 중요도 / 지적 건수	4 미만	4 이상 8 미만	8 초과 16 미만	16 이상
1~2	7	12	2	1
3	-	-	2	1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는 있으나 감사를 받지 않고 검토만 받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및 ▲5천억원 이상 비상장사 등에만 적용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회사 제재 감경 ※ 중기 과제

□ (현황 및 문제점)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 미흡

ㅇ 내부감사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가능성을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법무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증선위 보고 및 감사인 제출

[과거 사례 : 내부감사기구]

◈ A社 상근감사 甲은 내부 신고에 따라 회계부정 가능성을 인지하고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외부조사 실시후, 대표이사에 재무제표 수정 적극 요구

◈ A社는 회계감리를 거쳐 과징금 등 제재처분 과정에서 자진수정에 따른 과징금 10% 감경을 받았으나, 상근감사 甲은 이후 계약 미연장으로 교체

□ (개선방안)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ㅇ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 마련(연구용역 진행중)

* (예) 회계·감사부서와 내부감사기구 소통,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 결정, 내부고발자 보호, 특수관계자 등 제3자 거래 통제 등

○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하여 회사 또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예) 감사위원 · 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한 경우 감경 적용

☞ (필요조치) 시행세칙 [별표1(조치양정기준)] 개정 필요

4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제재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 미흡

* 현재는 감리착수 전 자진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 30% 감경만 가능

○ 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재재를 받게 됨에 따라 소극적 대응 가능성

○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정정할 유인 감소

[해외 사례 : 경영진 교체후 노력에 따른 제재감면]

◈ 미국 Cloopen社는 '21년 중 해외자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과대계상 분식혐의를 '22.4월 결산 중 외부감사인이 발견 후 이사회 보고

◈ 이사회는 즉시 경영진 교체, 가담자 해고 및 내부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22.5월 SEC에 자진 신고 및 조사 적극 협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 완료

◈ '24.2월 SEC는 민사 과징금 및 벌금 면제 조치 발표

□ (개선방안)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관련없는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등 제재 인센티브 확대

○ 교체된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계부정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 책임있는 임원 교체, 정정공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당국 보고·협의,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 면제,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 대체 등 적극 고려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Ⅳ. 향후 계획

□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 ㅇ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법규 개정안 마련
- ㅇ 법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
- ㅇ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세부 과제	소관법규
1. 중대한 회계부정 일벌백계하여 시장질서 확립	
1 고의적 분식회계 과징금 금액 상향	외감규정
2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근거 마련	외감법 시행령 외감규정
3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외감법 시행령 외감규정
4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외감법
2. 회사의 회계투명성 확보 인센티브 개선	
1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외감규정
2 다수의 위반사항 발생시 조치 실효성 제고	외감규정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제재감경(중기)	외감규정
- 내부감사기구 회계감시 행위기준 마련	
- 행위기준별 제재감면 기준 마련	
4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과징금 감면	외감규정